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35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D(E생)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7. 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는 2016. 3. 31. D에게 700만 원을 만기일 2021. 3. 25.,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21. 2. 19.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1차전1119호로 D을 상대로 12,501,265원 및 그 중 6,987,4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7. 23. 확정되었다. 다. 한편, G는 2017. 3. 19. 사망하였고(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H, 피고가 있었고, 법정 상속분은 각 1/3이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7.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3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지분을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였고, 망인이 2007년경 뇌경색을 진단받고 2017. 3. 19.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병하여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이가 된 것이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망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등 생전의 망인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D 및 다른 상속인인 H가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D와 H의 각 상속지분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약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1998. 4. 27.부터 생전의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을 부양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공과금 등도 고령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던 망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② 망인은 2007년경 뇌경색을 진단받고 약 10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7. 3. 19.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망인을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비 상당을 부담하였다.

③ D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인 H도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데 동의하였다.

④ 나아가 피고가 D의 여동생이기는 하나 D의 채무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추심 기회와 형평의 원칙을 실현할 만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한 시가 역시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택순

별지